

소중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의 수속 체크리스트

2026년(레이와 8년) 4월1일 현재

		신청 · 신고가 필요한 분	내용	신청 · 신고가 필요한 분	접수 창구 및 문의처
1	☐	전원 ※1	사망신고	사망신고서(사망진단서도 함께)	시민과 · 각 지소 등
		이와키시에 주민등록을 하셨던 분			
2	☐	전원 ※1	주민이동신고		신고 · 증명그룹 TEL 0246(22)7447
3	☐	인감등록을 하셨던 분	인감등록수첩 반납	인감등록수첩	주민대장그룹 TEL 0246(22)7444
4	☐	마이넘버카드(개인번호카드)를 소지한 분	반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(각종 절차상 개인번호를 사용하실 경우가 있습니다)		마이넘버카드 교부그룹 TEL 0246(22)7026

※1의 수속은 일반적으로 장례사업자가 유족을 대신하여 처리합니다.

국민건강보험 ·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· 국민연금에 가입하셨던 분

	신청 · 신고가 필요한 분	내용	필요서류	접수 창구 및 문의처
	이와키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셨던 분			
5	☐	전원 ※2	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의 반납	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
6	☐	국민건강보험 가입 전에 사회보험 등에 피보험자(본인)로 가입되어 있었고, 사회보험 등의 자격을 상실한 후 3개월 이내에 사망하신 분은 제외	장례비 지급 신청	담당과에 상담해 주십시오.
7	☐	한도액 적용 인정증 등을 가지고 계신 분 ※2	한도액 적용 인정증 등의 반납	한도액 적용 인정증 등
	후기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하셨던 분			
8	☐	전원	후기고령자 의료 자격확인서 등의 반납	후기고령자 의료 자격확인서 등
9	☐	후기고령자 의료보험 가입 전에 사회보험 등에 피보험자(본인)로 가입되어 있었고, 사회보험 등의 자격을 상실한 후 3개월 이내에 사망하신 분은 제외	장례비 지급 신청	담당과에 상담해 주십시오.
	국민연금에 가입하셨던 분			
10	☐	국민연금 보험료를 36개월 이상 납부하고, 노령기초연금 · 장애기초연금 지급을 받지 않은 분	사망일시금 청구	담당과에 상담해 주십시오. ※ 후생연금 등(피부양자 포함)에 가입기간이 있는 분은 푸(타이라)연금사무소 Tel 0246-23-5611로 문의해 주십시오.
11	☐	국민연금 피보험자 기간 중 사망한 분 또는 노령기초연금 수급권자였던 분 등	유족기초연금 청구	
12	☐	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· 면제기간이 10년 이상이며 노령기초연금 · 장애기초연금 지급을 받지 않은 분	과부연금 청구	
13	☐	장애기초연금 · 유족기초연금 · 과부연금만을 수급하던 분	미지급 연금 청구	담당과에 상담해 주십시오. ※기타 연금을 수급하던 분은 푸(타이라)연금사무소 Tel 0246-23-5611로 문의해 주십시오.

※2...본청 시민과에서 함께 수속할 수 있습니다.

자녀가 있는 분

		신청 · 신고가 필요한 분	내용	필요서류	접수 창구 및 문의처
14	☐	의료비 조성을 받던 분 (양육의료, 육성의료, 소아만성특정질환의 료)	수급자증 반납 및 각종 자격 상실 신고 등	수급자증	어린이가정과 모자보건계 (종합보건복지센터 내) TEL 0246(27)8597
15	☐	새로 해당하는 분(소득 제한 등 있 음)	아동부양수당 신청	신속히 담당 창구에 상담해 주십시오.	각 지소의 시민복지계・ 각 지구보건복지센터 등 平(타이라) TEL 0246(22)7457(19~21) TEL 0246(22)1163(상기 이외) 小名浜(오나하마) TEL 0246(54)2116(19~21) TEL 0246(54)2115(상기 이외) 勿来・田人(나코소・다비토) TEL 0246(63)2117(19~21) TEL 0246(63)2116(상기 이외) 常磐・遠野(조반・도노) TEL 0246(43)2116(19~21) TEL 0246(43)2115(상기 이외) 内郷・好間・三和(우치고・요시마・미와) TEL 0246(27)8690 四倉・久之浜大久(요쓰쿠라・히사노하마오히사) TEL 0246(32)2114 小川・川前(오가와・가와마에) TEL 0246(83)1329
16	☐		한부모가정 등 의료비 조성		
17	☐	보육소(원)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분	가족 구성 변경		
18	☐	각종 조성 급부 등을 받고 있었으나 수급 자격이 소멸된 분 (아동수당, 아동부양수당, 특수아동 부양수당, 영유아 의료비 조성, 어린 이 의료비 조성 등)	수급자 변경 신고 등		

☆ 첨부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, 사전에 담당과에 상담해 주십시오.

⇒뒷면 계속

법무국에서 알려드립니다.
2024년(레이와 6년) 4월 1일부터 상속등기가 의무화되었습니다.
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복지 수속

	신청 · 신고가 필요한 분	내용	필요서류	접수 창구 및 문의처
	장애가 있는 분			각 지소 시민복지계 · 각 지구 보건복지센터 등 ※앞 페이지 연락처 참조
19	☐	신체장애인수첩 · 요육수첩 · 정신장애 인 보건복지수첩 중 하나를 소지한 분	수첩 반납	
20	☐	그 밖의 지원 등을 받고 있던 분	담당과에 문의해 주십시오.	
21	☐	개호보험 피보험자증 등을 교부받았던 분 ※3	개호보험 피보험자증 반납	
22	☐	지정난치병 의료비 수급자증을 교부 받았던 분	의료비 수급자증 반납	의료비 수급자증
				보건소 지역보건과 보건지도계 TEL 0246(27)8594

※3…본청 시민과에서 함께 수속할 수 있습니다.

그 밖의 수속

	신청 · 신고가 필요한 분	내용	필요서류	접수 창구 및 문의처
23	☐	125cc 이하 또는 1.0kW 이하 원 동기 부착 자전거 또는 소형특수자 동차를 소지한 분	폐차 신고	표지(번호판), 표지교부증명서
24	☐		명의변경 신고	표지교부증명서
25	☐	고정자산세 · 도시계획세 납세통지 서를 받고 계시던 분	납세통지서 송부처 변경 등의 수 속 또는 현 소유자 신고서 제출 (상속인 중에서 다음 연도 이후 의 납세의무자를 지정 신고하는 수속)	담당과에 상담해 주십시오. (신고용지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)
26	☐		납세관리인 신고서 제출(납 세관리인의 설정 · 변경 · 폐지 수속)	자산세과 · 각 세무사무소 등 상각자산계 TEL 0246(22)7434
27	☐	미등기 가옥을 소유하고 있던 분	가옥 변동 신고 (소유자를 변경하 는 경우의 수속) ※등기 가옥의 경우에는 법무국에 서 수속하셔야 합니다.	상속관계도, 유산분할협의서 및 인감증명서 사본 등
28	☐	수도 사용을 중지하실 분	수도 사용 중지	이와키시 수도요금 고객센터 로 연락해 주십시오.
29	☐	수도 사용자 명의를 변경하실 분	사용자 변경 신고	이와키시 수도요금 고객센터 TEL 0246(22)9300
30	☐	급수장치 소유자를 변경하실 분	소유자 변경 신고	담당과에 연락해 주십시오.
31	☐	시영묘원 (미나미시라도 · 아즈마 다) 을 이용 중인 분	사용권 승계 · 반환 · 납골 등	담당과에 상담해 주십시오.
32	☐	개를 기르던 분	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 (개 주인의 변경 등)	개 등록표(犬鑑札) 번호를 적 어 지참해 주십시오.
33	☐	농지를 상속한 분	상속한 농지 신고	상속 수속 완료 후 담당과에 연락해 주십시오.
34	☐	산림을 상속한 분	상속한 산림 신고	상속 수속 완료 후 담당과에 연락 해 주십시오.

☆ 첨부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, 사전에 담당과에 상담해 주십시오.